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8일, 서명옥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8.22.)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 의원)

마약류사범의 수는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하였으며, 마약류 범죄의 출소 후 3년 내 재범률은 36.3%로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이에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될 시 사후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여 마약류사범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이후에도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자 외에도 다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체계 마련 시 마약류 중독자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환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질병분류기호·질병명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치료감호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자 외에도 다수 있으므로 이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은 현행으로 유지하며, 부칙의 시행일을 시행예정법률에 부합하게 조정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치료감호대상자는 마약류 중독자 외에도 다수 있으므로 이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수정하며, 부칙의 시행일을 시행예정법률에 부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치료감호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의2제4항).
- 나.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은 현행을 유지함(안 제32조제2항).
- 다. 시행일을 2025년 2월 7일로 함(안 부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2제4항 중 “치료감호가”를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을 “주민등록번호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중 “1월 1일”을 “2월 7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 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 ----- ----- 二. ⑤ (개정안과 같음)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생략)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현행과 같음)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② ----- ----- ----- -----	② ----- ----- ----- -----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 호와 환자나 동물 의 소유자·관리자 의 성명 및 <u>주민등 록번호</u> 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 여야 한다. < <u>단서</u> <u>신설</u> >	----- ----- ----- ----- ----- ----- ----- <u>주민등록번 호, 질병분류기호</u> <u>또는 질병명을</u> ----- ----- ----- ----- ----- ----- ----- <u>다만, 질병을 특정 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분류기호와 질 병명은 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u>	----- ----- ----- ----- ----- ----- ----- <u>주민등록번 호를</u> ----- ----- ----- ----- ----- ----- ----- <u>삭제</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 <u>2월 7 일</u>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u>
④ (생략)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u><후단 신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는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	----------------